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8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이병진・이연희・윤준병

송옥주 • 윤건영 • 주철현

유후덕 • 홍기원 • 한정애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 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

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 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고, 대학 급식 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 마.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함(안 제26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학교를"을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을"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에 식생활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

- 제26조의3(대학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생활 체험및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의4(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 생활 교육(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 식생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식생활 교육
 - 3.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4. 그 밖에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의5(식생활 교육의 달)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학교"란 「유아교육법」 제	4
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를</u> 말한다.	<u></u> 학교 및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을
<u><신 설></u>	제26조의2(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
	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
	려는 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우수학

<신 설>

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 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에 식생활 교육의 운 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대학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생활 체험 및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와 건 강 증진을 위하여 대학, 지방자 <신 설>

<신 설>

지단체와 협의하여 대학 급식 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4(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식생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식생활 교육
- 3.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4. 그 밖에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의5(식생활 교육의 달) 국 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 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

생활 교육의 달로 한다.